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803
----------	-----

2024. 12. 11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안지윤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- 다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- 라. 상정일자 : 2024년 11월 28일
 -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지윤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3673호, 2023. 8. 22., 일부개정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기존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일로 개정함(안 제17조).
- 인용된 법률의 제명 및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29조제4항 제3호 및 제32조제3항제2호다목)

-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,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6회에서 12회로 개정함(안 제35조 제2항).
- 관사 운영 실정에 맞게 관사의 운영비 부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(안 제55조).
-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(안 제62조제1항).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안은 기부채납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)의 규정과 일치시키고, 조례에서 인용된 법률의 제명과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,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기준금액과 연 분할납수 횟수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완화함과 함께, 관사 운영에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- 안 제17조는 법 제21조제1항*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“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”을 사용허가기간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
 - 현행 조례 제17조는 “기부채납일”을 원칙적으로 사용허가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되 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”을 예외적으로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,
 - 기부채납의 경우에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일견 해석상의 오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,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1조(사용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**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**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"총 사용가능기간"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- 안 제29조제4항제3호에서 인용한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제명이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개정되었고, 안 제32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인용한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7조를 삭제하고, 동일한 내용의 조문이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의 신설과 함께 동법 제10조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35조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) 제32조제2항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과 연 분할납부 횟수를 각각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, 연 6회에서 연 12회로 완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2023. 8. 22. 개정 전 시행령	2023. 8. 22. 개정 후 시행령
제32조(대부료의 납부기한) ② 법 제3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와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	제32조(대부료의 납부기한) ② 법 제3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와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- 안 제62조는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2023. 8. 22. 개정 전 시행령	2023. 8. 22. 개정 후 시행령
제81조(변상금) ① (본문 생략) 다만,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	제81조(변상금) ① (본문 생략) 다만,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- 한편 안 제55조는 본문에서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면서, 단서는 예외적으로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정하고 있는바,
 - 기존에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었던 보일러 운영비, 전기·전화·수도 요금, 관사가 아파트일 경우 공동관리비 등을 삭제하고,
 -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,
 - 관사 운영의 실정에 맞는 개정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따르며”를 “따르며,”로, “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”를 “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29조제4항제3호 중 “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9조제1항”을 “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3항제2호다목 중 “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7조”를 “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”로 한다.

제35조제2항 중 “10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, “6회”를 “12회”로 한다.

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5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.

1. 건물의 신축·개축 및 증축비, 공작물·구축물 시설비, 보일러,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, 통신가설비, 수도시설비,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
2. 건물유지 수선비,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
3. 응접세트,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

4.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제62조제1항제1호 중 “10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200만원”을 “1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300만원”을 “15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부료 등의 납기 적용례) 제35조제2항, 제6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<u>따르며</u> 그 기산일은 <u>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</u> <u>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7조(무상사용기간) ----- ----- ----- <u>따르며,</u> ----- <u>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9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④ (생략) 1.·2. (생략) 3. 「<u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</u>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,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. ~ 6. (생략)</p>	<p>제29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「<u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19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2조(사용료·대부료의 감면) ①·② (생략) ③ (생략) 1.·2. (생략) 가.·나. (생략) 다. 「<u>국가균형발전 특별법</u>」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</p>	<p>제32조(사용료·대부료의 감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·2. (현행과 같음)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「<u>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</u>」</p>

위기대응특별지역, 「고용 정책 기본법」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

3. (생략)

④ (생략)

제35조(대부료 등의 납기) ①

(생략)

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삭제

④ (생략)

제55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관

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.

- 1. 건물의 신축·개축 및 증축비, 공작물·구축물 시설비, 보일러,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

제17조

3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대부료 등의 납기) ①
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50만원 -----

----- 12회 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55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관

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.

- 1. 건물의 신축·개축 및 증축비, 공작물·구축물 시설비, 보일러,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

치비, 통신가설비, 수도시설비,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

2. 건물유지 수선비,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(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)

3. 보일러 운영비(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)

4. 응접세트,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(1급 또는 2급 관사만 해당한다)

5. 전기·전화·수도 요금(1급 또는 2급 관사만 해당한다)

6.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(1급 또는 2급 관사만 해당한다)

제62조(변상금의 분할납부) ① (생략)

1. 100만원 초과 : 1년 4회 이내 분납

2. 200만원 초과 : 2년 8회 이내 분납

3. 300만원 초과 : 3년 12회 이내 분납

② (생략)

치비, 통신가설비, 수도시설비,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

2. 건물유지 수선비,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

3. 응접세트,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

4.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

제62조(변상금의 분할납부) ① (현행과 같음)

1. 50만원 -----

2. 100만원 -----

3. 150만원 -----
--

② (현행과 같음)